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67

발의연월일: 2025. 2. 7.

발 의 자:조경태·이헌승·서천호

김상욱 • 곽규택 • 박성민

김예지 • 서일준 • 고동진

김소희 • 우재준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상충되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에 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도록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4조).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회는 <u>서울특별시에</u> 주된 사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	따라
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
	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노력한
	<u>다.</u>